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방법 안내

1. 수급자격 신청을 위해 필요한 사항

- ☐ 「고용보험법」에 따라 이직 후 처음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할 때는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야 함
- ☐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직 후, 가능한 지체 없이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을 신청하면 됨
- ☐ 인터넷 활용이 가능하면,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고 '구직신청'을 한 뒤,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됨
- ☐ 수급자격 신청서를 미리 작성하여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려는 경우에는 3. 수급자격 신청서 작성 방법을 참조

2.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과 구직신청 방법



- ☐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회원가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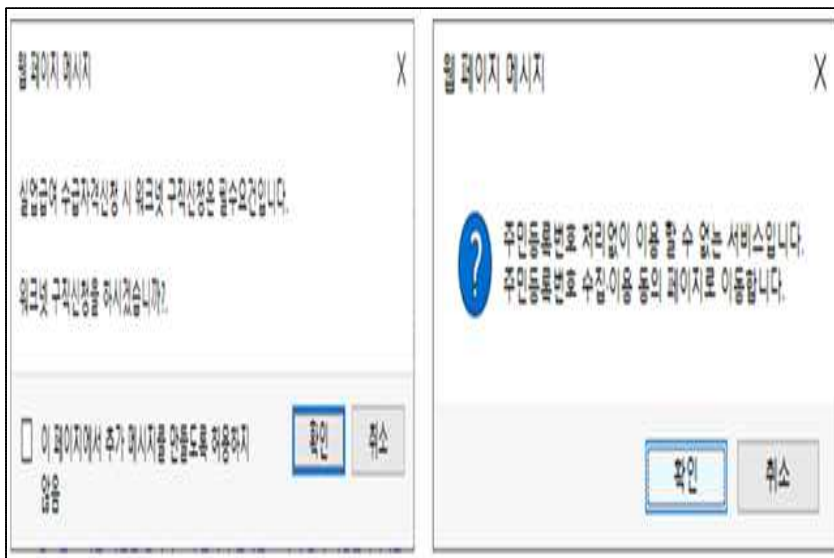
- 고용보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도 사용 가능



- 회원가입 완료 후, 공인인증서 등록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홈페이지 상단의 개인 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구직신청 관련 팝업메시지는 취소 버튼 클릭
- 온라인 교육 수강완료 후 구직신청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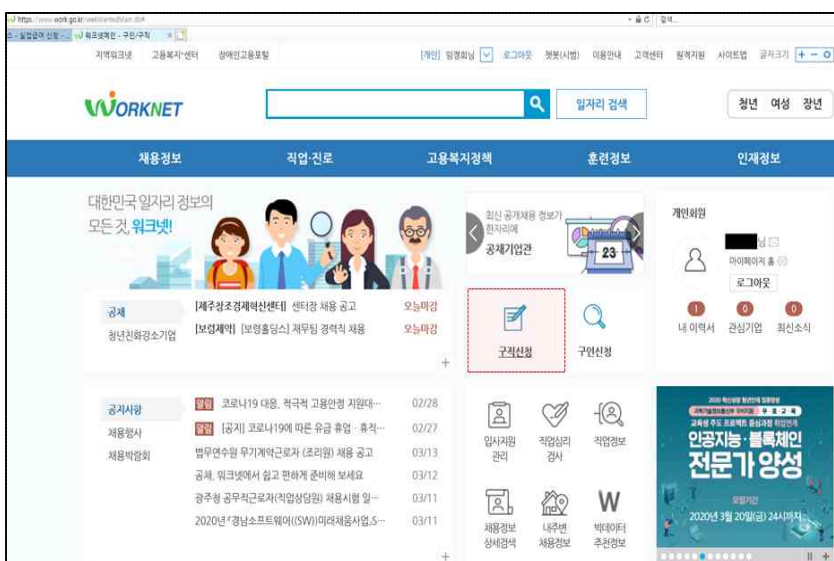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동영상 보기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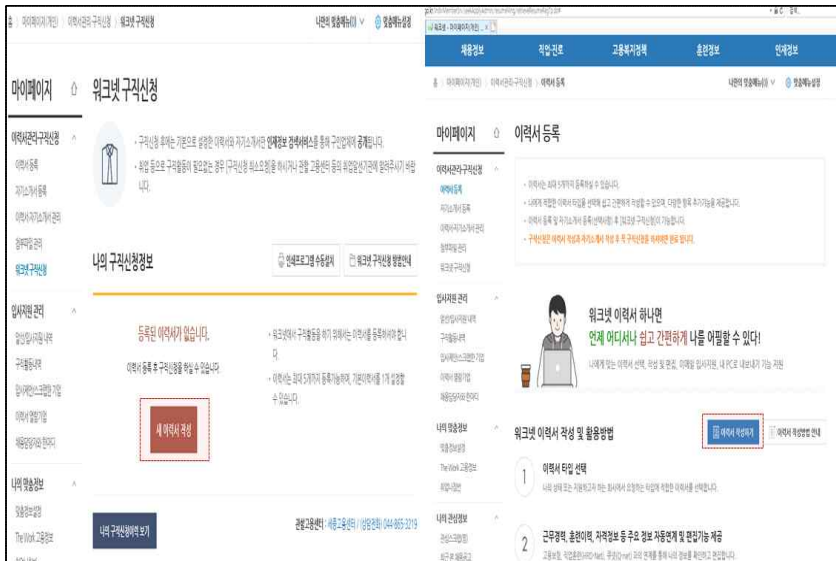
□ 수강 완료 시,
이수결과 화면
확인가능

□ 이수결과 화면
'구직신청
하러가기'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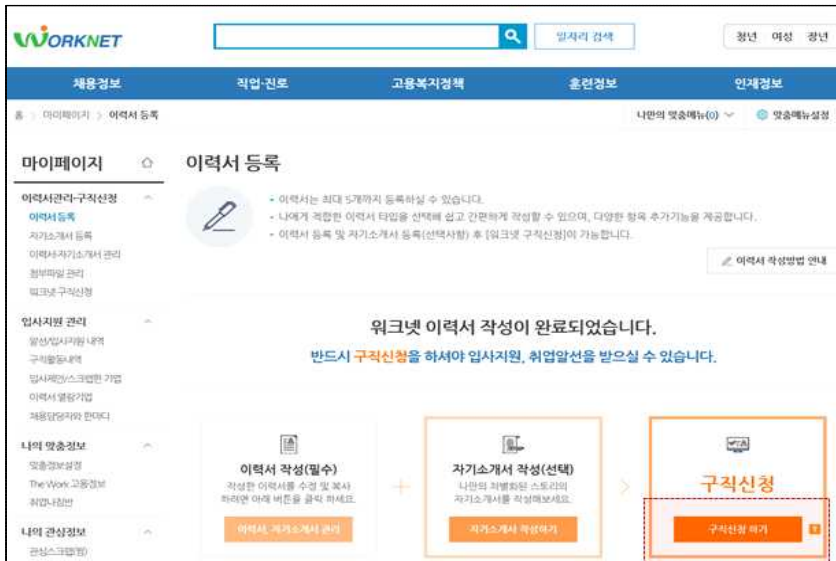
□ 워크넷 홈페이지
자동 연결
(www.work.go.kr)

□ '구직신청'
버튼 클릭



□ 구직신청 이전
이력서 먼저 작성

□ '이력서 작성'
버튼 클릭



□ 이력서 작성 이후
'구직신청 하기'
버튼 클릭



□ 구직신청
완료 시에는
워크넷 구직번호
확인 가능

□ 고용센터 방문
구직급여 신청

3. 수급자격 신청서 작성 방법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75호서식] <개정 2019. 12. 31.>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

※ 앞쪽, 뒤쪽 모두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5일)
신청인 (이직자) ①성명 홍길동 ③주소 세종시 한누리대로 422 11동 501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이메일): (휴대전화번호: 010-1234-5678) ②주민등록번호 740101-1234567		
최종 이직 사업장	④사업장명 고용노동부	
	⑤소재지 세종시	
	⑥자격취득일 (입사일) 2016년 4월 1일 (마지막 일한 날)	⑦이직일 2020년 3월 1일
⑧구체적 이직 사유 계약기간 종료로 더 이상 회사를 다닐 수 없음		

- 개인정보 작성
 - 전화·이메일 등 없는 경우 생략
 - 휴대전화로는 실업인정 관련 안내 문자 발송
 - 사업장 소재지는 시·군·구 단위까지만 작성

⑨ 현재 취직 중이거나 사업(자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 취직: 상용직·임시직·일용직·단시간근로자 등 • 사업(자영업):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비영리단체 대표자·부동산 임대업자·보험설계사·채권추심원·디딤계판매자 등	[] 취직 (취직내용:) [] 사업 (사업내용:) [V] 아니오
⑩ 앞으로 새로운 직장에 취직 또는 사업(자영업)이 가능한 상황입니까? • 임신·출산·육아·질병·부상·가족 간병 등으로 본인이 당분간 취업을 할 수 없는 상태인지 여부 기재함	[V] 예 [] 아니오 (취업이 곤란한 사유:)
⑪ 산재후입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입니까?	[] 예 [V] 아니오
⑫ 장애인의 경우 소정급여일수 산정 시 우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입니까?	[] 예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등 확인) [V] 아니오
⑬ 현재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구직신청을 하셨습니까?	[V] 예 [] 아니오
⑭ (해고당한 경우) 원직으로 복직을 위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셨습니까?	[] 예 [V] 아니오

- ☐ 9번~14번란은
본인의 상황을
사실대로 작성

⑮(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일(오늘) 이전 1개월 동안(. . . ~ . . .)의 주휴수당을 받은 날을 포함한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입니까?	[] 예 (10일 미만) [V] 아니오 (10일 이상)
--	------------------------------------

☐ 15번란은 일용근로자만 작성

- 수급자격 신청을 하려고 하는 날의 전날부터 1개월 동안 일한 날이 10일 미만이면 ‘예’ 10일 이상이면 ‘아니오’

☞ 유의사항: 근로일을 셀 때, 근로는 하지 않았지만 임금은 지급받은 날(주휴수당을 받은 날)도 근로일에 포함

⑯(일용근로자 중 건설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일(오늘)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있습니까?	[V] 예 [] 아니오
--	------------------

☐ 16번란은 건설일용근로자만 작성

- 수급자격 신청을 하려고 하는 날의 전날부터 14일 동안 하루도 근로한 날이 없으면 ‘예’ 그렇지 않으면 ‘아니오’

☞ 유의사항: 근로일을 셀 때, 근로는 하지 않았지만 임금은 지급받은 날(주휴수당을 받은 날)도 근로일에 포함

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자활근로 참여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였던 기간은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로 참여하셨나요? [] 예 [V] 아니오

* 의료·주거·교육 급여, 급여특례, 차상위계층은 실업급여가 적용됨

*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의 내용에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지급이 중단되고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반환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

2020년 3월 30일
 신청인 홍길동 lish Chon Da

OO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수급자격 신청일
 이름, 서명 작성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구직급여 수급 개시일 기준 만 60세 이상인 사람 제외)

①구직급여 수급기간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여부	[V] 신청함 [] 신청하지 않음
②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 중 본인부담금 납부 고지서 수령 방법	[V] 우편 [] 전자우편(이메일:)
③국민연금 보험료 중 본인부담금 납부 시 자동이체 희망 여부 * 구직급여 수급 계획에서 자동 출금됩니다.	[] 희망함 [V] 희망하지 않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신청합니다.

2020년 3월 30일
 신청인 홍길동 lish Chon Da

OO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뒤쪽은
 실업크레딧
 신청 희망자만
 작성

☐ 한번 신청하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됨

☞ 실업크레딧: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수급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1/4을 납부하면, 정부가 나머지 3/4의 보험료를 지원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관련 재산소득 확인 동의서
 (고소득자 또는 고액재산가 지원 제외)

본인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위한 보험료 지원 대상 파악을 위해 담당 직원이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른 재산 또는 소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홍길동 lish Chon Da

OO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실업크레딧
 신청 시에는
 반드시
 재산·소득
 확인 동의서에
 이름 서명 작성